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06. 12. 5(火)

조례안 심사보고서

거 창 군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년 11월 8일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경제과)

다. 회부일자 : 2006년 11월 9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1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토론 중 심사보류

○ 제13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 11. 27) 토론, 수정의결

마. 의안번호 : 제2006 - 59호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과장 임 영 만)

가. 제안이유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2조)

○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에 정함(안 제3조)

❍ 민법 제43조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출연 및 연구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4조)

❍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업무 위탁 시 수반되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종 목)

가. 연구센터 설립의 취지 검토

○ 거창의 화강석산업은 연간 1,500억 원의 매출규모를 보이고 있는 거창 실물경제의 중추이면서, 농산품이 대부분인 거창군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제1의 공산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 그동안 거창군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사업으로 화강석특화육성사업을 선정해 국비 등을 확보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화강석산업의 연간 매출규모를 5,000억 원 정도로 끌어올려 지역 실물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창을 친환경 첨단 석재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 있음.

○ 화강석산업의 최우선 과제는 고품질의 생산과 유통으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며 거창화강석만이 갖는 특성을 잘 살려서 이에 걸맞은 신기술을 도입하고 첨단석재 등을 개발함으로써 화강석에 관한 한 전국 최고의 산지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이의 한 방안으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거창화강석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특화육성을 위해 화강석 관련 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되며 이 사업에 대한 군민적 합의와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①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조례에서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 ②재단법인 설립의 절차 문제, ③법인에 대한 재산출연과 운영비 지원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함.

나. 재단법인 설립 시 조례에의 규정문제 검토

○ 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에 의해 관계부처 장관의 비영리 재단법인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갖춘 연구센터로 설립하게 되므로 법인등록 시에 반드시 조례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님.

○ 그러나 개인소유의 재단법인이 아닌 자치단체인 거창군의 재단법인으로서 설립 출연금이 전액 군비로 출연되며, 당분간 법인 운영이 군비의 출연을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법인의 설립과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정관을 제정하는 등 세부적인 법인설립 절차를 이행해야 바람직할 것임.

○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에 있어서도 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주요항목과 이사회의 구성방향 자격요건, 이사장의 선임방법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재산출연, 업무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등의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제출안에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만 있고 법인설립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빠져있음.

○ 조례의 제명도 <△△△**운영지원**조례>로 하는 것은 설립된 근거와 실체도 없는 법인에 운영지원만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설치 및 지원** 조례>로 하는 것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법인에 운영지원을 하는 것이 되므로 상식적으로도 부합되며 다른 자치단체의 법인설립 근거조례 규정의 선례를 보더라도 바람직함.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사례≫

○ 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경남)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경남)
○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진주시)
○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조례(단양군)
○ 부산광역시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부산시)
○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전북)
○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서울시)

※ **설치 및 지원**조례로 되어있지 않은 조례는 도내 <하동군녹차연구소 **운영지원**조례>가 있으나 그 외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조례의 내용도 위에 열거한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다. 재단법인 설립의 절차 문제 검토

○ 거창군에서는 지난 8월 22일 주례회의에서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계획을 보고하면서 9월 중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한 바 있으며, 9월 6일 제1회 추경에서 관련예산을 편성하였음.

○ 이후 11월 1일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0일에는 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법인정관과 이사회 구성 결정,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의욕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단법인 설립 시는 관련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조례의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11월 10일 창립총회에서 법인의 정관을 결정하고, 이사회 구성 및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출연금을 결정하는 등 조례내용의 근간이 되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은 모두 결정하여 놓고 뒤늦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만 담은 조례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 심의과정에서 법인의 정관과 다르게 수정가결 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라. 법인에 대한 재산출연과 운영비 지원의 문제 검토

○ 재단법인은 '돈'이 그 실체임. 출연자, 즉 그 돈을 낸 사람은 한 명일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지만, 일단 출연을 한 이상, 그 출연금은 돈을 낸 사람과는 엄격히 분리됨.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은 조례에서 인정하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

○ 대부분의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 시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몇 년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임

○ 화강석 연구센터의 경우 출연금이 1,000만원이며 매년 운영비를 군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또한 금년도의 예산은 모두 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재단법인의 독자적인 사업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모든 행·재정적 지원은 군에서 직접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언제까지 군비를 지원 할 것인지, 언제부터 연구센터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토록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는 석재조합 등 관련업체들이 출연을 하여 연구센터가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마. 결론적으로

○ 화강석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에 최선을 다해온 만큼, 법인정관에 관한 사항 등 그동안 추진된 상황을 본조례안에 개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가. 발 의 자 : 조 선 제 의원

나. 수정이유

○ 설립 출연금이 전액 군비로 출연되는 재단법인의 설립은 먼저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정관을 제정하는 등 세부적인 법인설립 절차를 이행해야 바람직할 것임. 그러나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만 있고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음.

○ 따라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요한 사항들이 본조례에 규정되도록 하고, 법인의 정관으로 위임해야할 사항, 임원의 구성방향, 정관변경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운영지원**조례에서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변경함.
○ 법인격과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연구센터가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조)
○ 임원구성과 인원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임기와 임면,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5조)
○ 연구센터에서 수행해야할 사업내용을 조례에서 정함.(안 제6조)
○ 연구센터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7조)
○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7. 심사 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운영 등)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8조(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센터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민법과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운영 등)**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재산출연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법 제4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연구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8조(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안
.	**제9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센터에 파견하거나 겸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연구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